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7-1판)」(21.6.11.)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1.7.1.)에 따라 수정·보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8판)」(21.7.1.)을 기본으로 작성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개별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8판)

2021. 7.



보건복지부

#

I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시행(7.1) 및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예방접종완료자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기본방향

- 각 지자체는 전국·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다수인이 이용(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①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유지 원칙,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대상 조정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지자체에서 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가급적 50% 이하 축소 운영 또는 중지(4단계만) 여부 결정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축소 운영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예방접종완료자(1차 접종 완료자 포함)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

< 예방접종을 받은자 >

- 1차 접종완료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안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접종 확인방법: 붙임 9(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참고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YOUTUBE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방문형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준수 사항 >

- (감염병 예방 교육) 시설장은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 (종사자 관리) 종사자는 수급자 방문 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보고하고 시설장은 업무배제 및 대체인력 파견 조치
- (소독·환기 등 조치) 종사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이용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시행 및 충분한 환기 실시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1)+(2):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3)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공간이 협소한 경우 참여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땀이 나는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 등 침이 튀는 활동은 하지 않기

< 예방접종을 받은자 >

- (완화) 1차 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고 접종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 제한 면제
 - (1차 접종완료자)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노래 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이용자 · 자원봉사자 · 외부강사 등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 ·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 (KF94, KF80등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서식3> 작성 후 출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

- (완화) 예방접종이 완료된 ①자원봉사자, ②외부 강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 등)하 출입 허용

※ 접종 확인방법: 붙임 9(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참고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4. 시설 입소자의 면회 · 외출 · 외박 운영

□ 입소자 면회

- 1~3단계시에는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면회를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 원칙(예방접종에 따라 접촉면회 시행)으로 하고, 4단계는 면회금지 원칙
-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사전 예약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면회금지시에도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및 SNS(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한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간 소통 유도

< 접촉면회 시행 기준 (1~3단계시) >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 (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공통 방역수칙 >

-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 (입소자) 마스크 착용(KF94, N95), 손소독 실시

- ① (면회객 접종완료)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사례1, 사례2)
 - ② (입소자만 접종완료) 1차 접종률 75%이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75%미만 시설은 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PCR 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사례3)
- (접종확인)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전자 증명서포함)를 통해 확인(붙임 9(예방접종이력 확인방법) 참고)

▶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유형	입소자	면회객	접촉면회	면회객 방역수칙	비고
접종완료 여부	사례1	○	○	허용	마스크(KF94,N95), 손소독	전체시설
	사례2	X	○			
	사례3	○	X	허용	마스크(KF94,N95), 손소독 마스크(KF94,N95),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접종률 75%이상시설 접종률 75%미만시설
	사례4	X	X	불가 (예외적허용)	보호용구** PCR 등 음성 확인***	3.9 기 시행 전체시설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 (방역책임자)의 판단하에 접촉면회 기준에 따라 4단계에서도 예외적 허용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비접촉 면회 운영방안 및 운영사례〉

구분		준수 사항
운영방안	사전안내	○ 사전예약제(면회신청서) 및 면회 준수사항 사전 안내
	방역용품 준비	○ 손위생 및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시설 출입
	출입확인	○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발열체크, 증상확인 등)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면회장소	○ 입실 면회는 금지, 시설 내 별도의 면회공간 설치 및 야외 면회장소 마련 -시설의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생활실 등과 분리되어 어르신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장소 -면회객과 어르신은 투명차단막(플라스틱, 투명비닐 등) 설치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어르신의 면회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마이크, 인터폰, 확성기 등 보조기구 설치 적극 협조
	신체접촉	○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운영사례	사후관리	○ 면회후 모니터링 및 방역관리 철저 -소독 및 환기, 입소자 7~14일간 모니터링 및 면회객 귀가 후 특이사항 모니터링 -면회 종료 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사용한 마스크 등 별도 수거·처리
	<실외형>	
		
	실외 비닐 설치형	실외 칸막이 설치형, 마이크 사용
	<실내형>	
		
	출입문형, 인터폰 사용	출입문형, 확성기 사용
		
	실내 유리창 설치형	실내 아크릴창 설치형

□ 외출 및 외박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시 금지
- 외출 및 외박 입소자는 시설 복귀 후 별도로 마련된 격리 생활 공간에서 일정기간(3일 이상)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 예방접종 완료자 >

- (완화) 방역지침 준수하에 예방접종 완료자 일정기간(3일 이상) 격리 공간 생활 조치 비규제

5.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m²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시설 운영중지 시 독거 노인 등에게 안부전화, 도시락 등 빈틈 없는 서비스 제공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자원봉사자· 방문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 시설 운영	운영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주의 사항	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 지자체에서는 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가급적 50% 이하 축소 운영 또는 중지(4단계만) 여부 결정하되, - 예방접종 완료자는 축소 운영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7.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입소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8. 행정사항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20.1.30. 시달)
- (노인요양시설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가 코로나19 관련한 유급휴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시·도의 보건의료총괄과 등 파견인력 총괄부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에 대체인력 요청가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름휴가 분산 계획 관련

- (여름휴가 분산) 휴가기간을 6월5주~9월3주(12주)로 확대하여 종사자 휴가 및 근무계획 수립하도록 권고·안내
- (모니터링 실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활용하여 휴가 근무계획 및 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
 - * 방역관리자 역할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통해 숙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격리시설 마련)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발열체크 등 확인)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 하도록 조치 필요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비접촉·접촉 면회 시행에 따른 별도 면회공간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준비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관리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설치 지자체 불일치)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시설 설치 지자체(또는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
 -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 협의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I.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II.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III.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머리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 일상 소독 방법 (예) 】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3.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환자발생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예) 】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안내(2-1판 참조))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코로나19 대응지침 9-2판 참조)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확진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직인

Seal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mm×297mm(복합지 80g/㎡(재활용품))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서식1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	종료일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 접촉되지 않은 입소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서식1-1

시설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 ¹⁾	호흡기 증상 ²⁾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6.5	-	-	-	√	설사	
				14:00							

서식2

접촉자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예시 (1)

[illegible]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직접 체온계로 측정(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예시 (2)

[illegible]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 설 명:**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 (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외부인 시설 출입관리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관리, 가족에게 안내 (※ 접촉면회 지침 확인할 것)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사회복지시설 명 : _____

감사 항목	내용 확인	적합성	부적합	증거 정보
1.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입소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명단 확보 및 보관 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 출입 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예 : 아침, 정오 및 저녁)을 설정합니다.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방문시간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해야합니다.			
3.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4.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	손 위생, 기침예절, 개인 보호구 사용,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 입소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모두 포함

검사관 서명 : _____ 검사 날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